

셀프케어 감정치유협회 정관

SELF-CARE EMOTIONAL HEALING ASSOCIATION (SEHA)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셀프케어 감정치유협회'라 하며, 영문명은 Self-Care Emotional Healing Association(약칭 SEHA)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심리학과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감정 치유 모델(REACH) 및 퍼실리테이션 방법론을 연구·개발하며,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자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 학습자(교사, 학생 포함)의 정서적 자립과 셀프케어 루틴 정착을 지원하고, 참가자의 감정 인식 및 회복 과정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주사무소의 세부 주소 지정 및 변경은 총회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심리학 및 뇌과학 이론에 기반한 REACH 감정 치유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등급별(1급, 2급) 민간자격의 검정 및 발급, 전문가 보수 교육 운영
- 감정 치유 모델(REACH) 기반 교육 워크숍 설계 및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식 교재, 워크북 및 전문가용 툴킷(Toolkit) 등 지식재산권 관리 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격 명칭 관련 감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행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전문가 회원 (1급):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자로서, 교육 및 평생교육 환경에서 정서적 소진 예방 및 성장을 목표로 세션 과정을 조율하며, 셀프케어 프로그램의 기획·설계 및 그룹 감정 역동 관리를 주도하는 전문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가 회원 (2급):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자로서, 구축된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퍼실리테이션 기본 기법을 활용하여 그룹 활동을 전개하고, 참가자가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셀프케어 루틴을 학습하고 감정을 인식·표현하도록 돕는 실무 직무를 수행한다.
- 준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회의 운영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단,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한한다),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 관련 교육 및 연구 자료 활용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3. 공식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전문가 윤리 및 징계)

- ① 모든 전문가 회원은 본 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비밀 유지 및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격을 상업적으로 오남용하거나 윤리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3. 본 회의 핵심 직무인 REACH 모델 방법론, 프로그램 저작물 및 교구재(툴킷)를 무단 복제·도용하거나, 탈퇴 및 제명 이후 협회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변형·오남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
- ③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또는 대면을 통한 최소 1회 이상의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이사 2인 이상 (대표 포함)
3.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대표 및 임원은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및 직무대행)

- ①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 ② 대표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승인의 건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사항

제14조 (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식)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이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또는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식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 (이사회 구성 및 의결)

- ①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업무 집행,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예산·결산안 편성,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실무 중요 사항과 내부 운영 세칙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3 (정관 변경 및 해산 정족수)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자격 검정

제15조 (자격 운영 및 기구)

- ① 본회는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의 검정 및 관리를 수행한다.
- ② 자격 검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자격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검정위원회 및 윤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부 자격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자격 유효기간)

본회가 발급하는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며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원 및 사적분배 금지)

- ① 본회의 운영 경비 및 자산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자격 검정 수익 및 기타 부속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근 임직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급여 및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 ③ 본회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회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오직 제4조의 목적 사업에만 전액 사용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 당해 연도의 회계연도는 창립총회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남은 자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0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설립 발기인의 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합의하여 본 정관에 고유한 효력을 부여하며,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은 [별첨: 설립 발기인 명부 및 서명서]에 기재하여 본 정관 뒤에 첨부한다.

제2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 (운영기관 변경 및 권리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기존 명코칭 주관으로 등록·운영되던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의 모든 운영 권리와 REACH 모델 방법론의 활용 권한은 본 협회의 창립총회일자로 소급하여 협회로 승계한다. 기존 명코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 효력은 본 협회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6년 7월 14일

셀프케어감정치유협회 (SEHA)

대표자: 백 명

(인 또는 서명)



(별첨: 1. 설립 발기인 명부 및 서명서 1부)